

의안번호	2218585
의 퇴 인	김기표의원
회 답 일	2026.4.27.
추계번호	26E2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
 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7~2031년 5년간 총 5,426억원(연평균 1,049억원)으
 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안 제100조의5, 100조의29 등)	-1,089	-1,069	-1,049	-1,030	-1,010	-5,246	-1,049

- ※ 자료의 한계로 제도 변경 시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총급여액 3,200만원
 초과 4,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구는 추계에 반영되지 않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현행 홀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유형으 로 분류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 적용 － (현행) 한부모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tr><td>7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등 × 285/700</td></tr><tr><td>1400만원 미만</td><td>285만원</td></tr><tr><td>3200만원 미만</td><td>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285/1800)</td></tr></table> － (개정안) 한부모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tr><td>8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등 × 330/800</td></tr><tr><td>1700만원 미만</td><td>330만원</td></tr><tr><td>4400만원 미만</td><td>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330/2700)</td></tr></table>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285/700	1400만원 미만	285만원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285/180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330/800	1700만원 미만	330만원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330/270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285/700																	
1400만원 미만	285만원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285/180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330/800																	
1700만원 미만	330만원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330/2700)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2	안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한부모 가구의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 적용 - (현행) 한부모 가구 자녀장려금 산정식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21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 × 100만원</td></tr><tr><td>70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td></tr></table> - (개정안) 한부모 가구 자녀장려금 산정식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25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 × 100만원</td></tr><tr><td>70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td></tr></table>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2	안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5.1.~5.30. 신청, 지급 8~9월)이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416만가구에 4.7조원이 지급되었음

[표 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귀속연도	가구 수				지급액			
	합계	단독	홀벌이	맞벌이	합계	단독	홀벌이	맞벌이
2020	4,262	2,779	1,228	255	44,732	24,130	16,994	3,608
2021	4,416	3,000	1,175	241	44,871	25,409	16,150	3,312
2022	4,262	2,939	1,112	211	47,254	27,394	16,697	3,163
2023	4,101	2,866	1,049	186	45,636	26,989	15,802	2,845
2024	4,157	2,901	987	269	46,567	27,559	14,822	4,18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가구 유형별로는 홀벌이 98.7만 가구에 총 1.5조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한부모 가구는 16.9만 가구(17.1%)로 해당 가구에 총 2,649억원이 지급됨

[표 3]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수 및 지급 규모¹⁾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귀속)	홀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가구 수	지급액	가구 수	지급액
2020	1,227,935	1,699,457	204,205	309,499
2021	1,175,199	1,614,994	185,384	278,215
2022	1,112,429	1,669,717	176,469	286,458
2023	1,067,220	1,606,825	171,859	275,757
2024	987,735	1,482,221	168,679	264,875

주: 1) 홀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일부 포함된 수치임.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 6월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며, 그 과정에서 실제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금액(3,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발생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87.6만 가구에 8,900억원이 지급되었음

[표 4]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귀속연도	가구 수			지급액			가구당 지급액(만원)		
	합계	홀벌이	맞벌이	합계	홀벌이	맞벌이	합계	홀벌이	맞벌이
2020	705	586	119	6,060	5,066	994	86.0	86.5	83.5
2021	578	484	94	4,966	4,178	788	85.9	86.3	83.8
2022	519	439	80	5,035	4,280	755	97.0	97.5	94.4
2023	954	647	307	9,720	6,997	2,723	101.9	108.1	88.7
2024	876	604	272	8,900	6,515	2,385	101.6	107.9	87.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2) 추계방법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규모 및 재산 규모별 한부모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

-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재산 규모별 지급현황 자료를 함께 활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변경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총급여액 규모별(26개 구간) 및 재산 규모별(7개 구간) 지급 가구 수 및 지급금액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총지급액 변화를 추정함
 - －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액 구간별 ‘중앙값’을 해당 구간의 ‘평균 총급여액’으로 가정하여 1가구당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추정한 후, 이를 해당 구간의 가구 수에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지급액을 추정함
 - * 예: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의 평균 총급여액 450만원으로 가정
- 동 추계 방법을 적용하여 현행 기준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2024년 한부모 가구(연간 총급여 3,200만원 미만)에 지급된 총지급액 실적치는 2,642억원, 총지급액 추정치는 2,647억원으로 두 값이 유사한 수준을 보임(+5억원)
 - － 2024년 한부모 가구 지급액 실적치 2,642억원¹⁾, 추정치 2,647억원

1) 홀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 기준 지급액 실적치임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 장려금 산정식을 적용한 후, ‘2024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17.1%)’을 적용하여 추정
 - 국세통계연보의 가구 유형별·총급여액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총급여액 구간별 ‘중앙값’을 ‘가구당 평균 총급여액’으로 간주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 장려금 산정식을 적용
 - － 이에 따라 1가구당 자녀장려금 산정액을 추정한 후, 이를 해당 구간의 가구 수에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지급액을 추정함
 - 다만,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수를 알 수 없어,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수’에 ‘2024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17.1%)’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근로장려금) 한부모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총지급액은 3,74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2024년 기준 1,094억원으로 추계됨
 - 다만, 총급여액 등이 3,200만원 미만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요건을 맞벌이 가구 기준(총급여액 등 4,400만원 미만, 지급액 상향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총급여액 3,200만원 초과 4,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구는 추계에 반영되지 않음**
 - － 총급여 3,200만원 초과 4,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구 수를 알 수 없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표 5]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단위: 가구, 백만원)

총급여액 등 규모별	한부모 가구		현행 한부모 가구 기준		개정안 맞벌이 가구 기준	
	지급액 실적치		지급액 추정치		지급액 추정치	
	가구수 ¹⁾	총지급액 ¹⁾	총지급액	추정/실적	총지급액	추가 지급액
	A	B	C	D=C/B	E	F=E-C
합계	166,800	264,190	264,721	1.00	374,097	109,376
1백만원 미만	9,381	1,734	1,850	1.07	1,875	24
2백만원 미만	5,701	3,232	3,340	1.03	3,384	44
3백만원 미만	5,494	5,201	5,347	1.03	5,417	70
4백만원 미만	5,898	7,716	8,004	1.04	8,110	105
5백만원 미만	5,225	8,698	9,129	1.05	9,249	120
6백만원 미만	4,959	10,090	10,597	1.05	10,737	139
7백만원 미만	5,395	13,061	13,715	1.05	13,896	180
8백만원 미만	5,355	14,134	14,619	1.03	15,869	1,250
9백만원 미만	5,179	13,818	14,152	1.02	16,386	2,234
10백만원 미만	5,139	13,720	13,969	1.02	16,175	2,206
12백만원 미만	9,580	25,624	26,056	1.02	30,170	4,114
13백만원 미만	5,121	13,709	13,925	1.02	16,124	2,199
14백만원 미만	4,571	12,203	12,365	1.01	14,317	1,952
15백만원 미만	4,600	12,060	12,099	1.00	14,409	2,311
17백만원 미만	9,329	22,570	22,459	1.00	29,256	6,797
20백만원 미만	13,674	28,108	27,719	0.99	40,417	12,698
21백만원 미만	4,347	7,642	7,469	0.98	11,782	4,313
22백만원 미만	4,483	7,220	7,034	0.97	11,635	4,601
25백만원 미만	15,827	20,370	20,069	0.99	37,363	17,294
28백만원 미만	18,285	16,007	14,942	0.93	36,699	21,757
30백만원 미만	10,231	5,209	4,533	0.87	17,495	12,962
32백만원 미만	9,026	2,064	1,329	0.64	13,332	12,00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자녀장려금) 한부모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산정식)을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2024년 기준 약 19억원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홑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총급여액 구간별 ‘중앙값’을 ‘가구당 평균 총급여액’으로 간주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 장려금 산정식을 적용한 결과,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가구당 약 1만원에서 5만원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은 가구유형별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없고,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추가 지급액 발생
 - 이를 총급여액 구간별로 합산한 결과, 추가 지급액은 약 19억원 규모로 추정됨
 -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수를 알 수 없어,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수’에 ‘2024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홀벌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17.1%)’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세수효과는 최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한부모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반영하여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 수급요건의 변화가 없었던 2023~2024년 기간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한부모 가구 수가 연간 1.9% 감소한 점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세수효과도 매년 1.9%씩 감소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2031년 5년간 총 5,246억원(연평균 1,0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자료의 한계로 총급여액 3,200만원 초과 4,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구는 추계에 반영되지 않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장려금 확대	-1,071	-1,051	-1,031	-1,012	-994	-5,159	-1,032
자녀장려금 확대	-18	-18	-18	-17	-17	-88	-18
계	-1,089	-1,069	-1,049	-1,030	-1,010	-5,246	-1,04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